

#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7
○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
○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22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	25

# 제 천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05.

제천시장

○ 회 부 일: 2021. 10. 05.

○ 상 정 일: 2021. 10. 14.(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 가. 제안이유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 요구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제 완화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나. 주요내용

○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환함으로써 입주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도모함(안 제14조제5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정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본 시설의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요구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취소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4. 관계 법 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5. 주요 질의 및 답변 "생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05.

제천시장

- 회 부 일: 2021. 10. 05.
- 상 정 일: 2021. 10. 14.(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관광시설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 "번지점프, 하강체험시설, 빅스윙 및 이젝션시트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며,
- 금년 개장 예정인 관광레포츠시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운영을 위해 시설현황, 운영시간, 요금체계 등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명시 및 법과 관련된 내용 개정(안 제3조제2항)
  - 관광시설 운영 위탁기간을 당초 "3년", "2년 범위에 1회 연장"에서 "5년", "5년"으로 변경
-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에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신설(안 제2조)
-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현황 및 이용시간 신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풍호반에 위치한 관광레포츠시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준공에 따라,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시간, 요금 체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 시행 중인 번지점프장 관련시설 이용요금의 현실화와 관광 레포츠시설물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에 근거하여, 당초 3년으로 하되, 2년 범위에 1회 연장할 수 있는 것을 5년으로 하되, 5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제천시가 위탁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할 수 있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고정시킴으로써 행정 경직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감소 될 수 있음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관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5. 주요 질의 및 답변 "생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3094호** 발의일자 : 2021. 10. 14.

번호 발의 자: 산업건설위원회 6명

#### 1. 수정이유

○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의 관광시설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수정하고 "제천 옥순봉 출렁 다리"의 이용료를 상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관광시설의 위탁 기간 수정(안 제3조)
-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 상향 조정(별표 8)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5년으"를 "5년 이내"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2,000원란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별표 8 중 "지역화폐로"를 "지역화폐 등으로" 한다.

【별표 2】

## 관광 레포츠 시설물 이용시간(제8조 관련)

구분	월별	이 등	용 시 간	비고
1 七	된 된	구 분	시 간	비
	동절기	평 일	10:00 - 17:00	
번지	(11월 - 2월)	토·공휴일	10:00 - 17:00	※필요시 제천시와 협 의 연장 또는 단축운
점프장	하절기	평 일	09:00 - 18:00	영(기상악화, 결빙 등)
	(3월 - 10월)	토·공휴일	09:00 - 20:00	0 ( 1 0 1 1 1 1 2 0 0 7
-1 -1	동절기	평 일	09:00 - 17:00	
하강 체험	(11월- 2월)	토·공휴일	09:00 - 17:00	,,
세 <sup>1</sup>	하절기	평 일	09:00 - 18:00	"
, _	(3월 - 10월)	토·공휴일	09:00 -20:00	
	동절기	평 일	09:00 - 17:00	
산악	(11월 - 2월)	토·공휴일	09:00 - 17:00	,,,,,,,,,,,,,,,,,,,,,,,,,,,,,,,,,,,,,,,
체험장	하절기(3월 - 10 월)	평 일	09:00 - 18:00	"
		토·공휴일	09:00 - 20:00	
키포수키	   동절기(11월~2월)	평 일	09:00~16:00	
청풍호관 광모노	0 2/(11 2 2 2)	토·공휴일	09:00~16:00	,,,,,,,,,,,,,,,,,,,,,,,,,,,,,,,,,,,,,,,
레일	하절기(3월~10월)	평 일	09:00~18:00	"
	9 2/(02 102/	토·공휴일	09:00~18:00	
키 ㅍ 누	   동절기(11월~2월)	평 일	09:00~16:00	※필요시 제천시와 협
청풍호 카약.카누	0 2/(11 2 22/	토·공휴일	09:00~16:00	의 연장 또는 단축운
/  기:/      장	  하절기(3월~10월)	평 일	09:00~18:00	여 여 이 기 기 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이 단기(0년 10년)	토·공휴일	09:00~18:00	(기상악화, 결빙 등)
제천	   동절기(11월~2월)	평 일	09:00~17:00	※필요시 제천시와 협
옥순봉	0 2/1112 22/	토·공휴일	09:00~17:00	의 연장 또는 단축운
출렁	   하절기(3월~10월)	평 일	09:00~18:00	여 이 (기사이된 커비 도)
다리	9 2/102 102/	토·공휴일	09:00~18:00	(기상악화, 결빙 등)

<sup>※</sup>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모든 공휴일을 말한다.

[별표 8]

#### 관광 레포츠 시설물(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요 금	적 용
일 반	3,000원	만 7세 이상

- 1) 일반의 경우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할 수 있다.
- 2) 만 7세 미만은 무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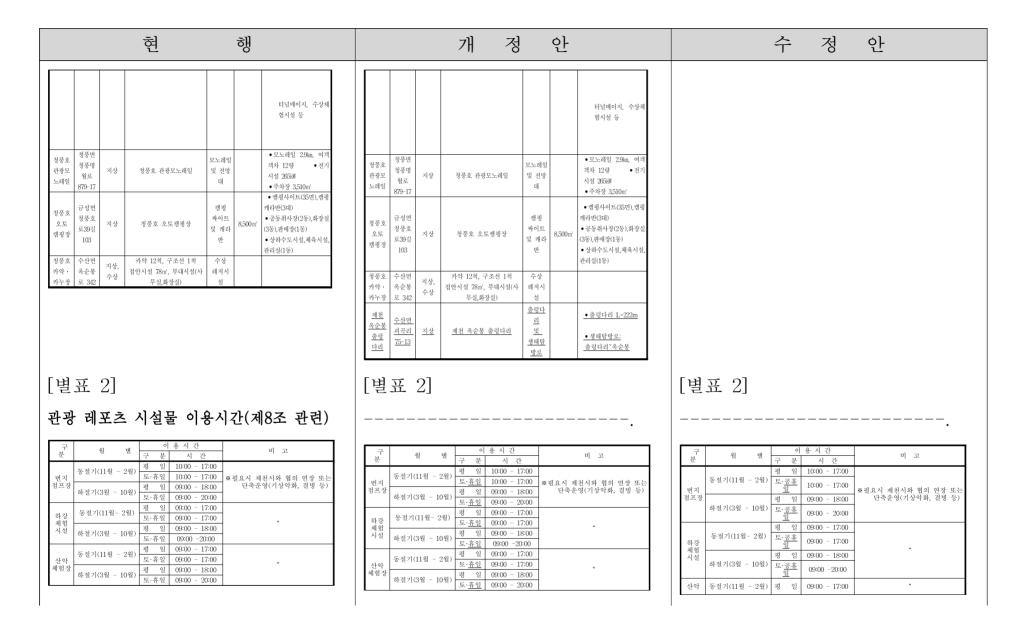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를 위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		
물의 관리 운영에 <u>관하여 필요</u> 한	<u>필요</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① 제천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①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이하 "관광시설"이라 한		
다)을 관리 운영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8.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8.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
기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기간) ①	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
할 때에는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시 산	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	2	2
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		
은 <u>3년으로 하되, 2년</u> 의 기간 범위	- <u>5년으로 하되, 5년</u>	<u>5년 이내로 하되, 5년</u>
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시장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개
(수탁자를 포함한다)은 관광시설		정안과 같음)
이용시간을 별표 2와 같이 하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3부터 별		
표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	별표 8	
등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는 시장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용료		
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개정안과
	같음)	같음)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2	② (개정안과 같음)
<u>기타재산</u> 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 <u>그 밖에 재산</u>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단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	<u>다만,</u>	
반되지 <u>아니하는</u> 범위에서 해당		
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轉		
貸)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3	③ (개정안과 같음)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		
리 시장의 승인을 <u>얻어야</u> 하며 준	받아야	
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수탁자는 시설의 비품 및 물품	⑤	⑤ (개정안과 같음)
에 대하여 대장을 <u>비치하고</u> 유지	<u>갖춰 두고</u>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u>기타</u>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4. 그 밖에	4. (개정안과 같음)
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u> 「제천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	
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u>산 및 물품관리법」,</u>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13조(시행규칙) <u>필</u> 제13조(시행규칙) (개정인	· 
<u>관하여 필요</u> 한 사항은 규칙으로	<u>\Q</u>	
정한다.		
[별표 1]	[별표 1] [별표 1] (개정안과 같음	)
관광 레포츠 시설물 현황(제2조 관련)		
구분         위치         충별         시 설 명         주요구조         면 적         비 고	구분 위치 충별 시 설명 주요구조 면 적 비 고	
번지점프대 지상 (번지절프, 비스윙, 이제선시 철 골 조 1 식 36m, 이잭선시트36m	번지점프대 지상 (번지점프, 빅스윙, 이잭선시 철 골 조 1 식 ● 번지점프62m, 빅스윙 36m, 이잭선시트36m	
제천시   청중면   4.375m   철 근 (길이35× 번지   천종호로 지하 절 평 풀 근크리트 목25×깊   이5)	변기 (2년 ) 전체, 기구단 (	
마= 6 (청종팬   실근론크   기상 번지점프관리실 리트 스 280,65㎡   기융 및 휴게실 라브	점프강 (상통편 이5) 이5) 이5) 이5) 기상 번지점프란리실 기존 및 휴계실 기존 라브 기존	
지상 2 층 완리사무실 " 71.0m"	지상 관리사무실 " 71.0m'	
하강 체험 " 지상 하강체험시설 철골조 시설 *** *** *** *** *** *** *** *** *** *	하강 체험 " 지상 하강체현시설 철물조 "마위 2개소, 리프트 2 게소, 착륙장 2개	
- 금성면 산악 청풍호 - 지상 아웃도어 체험시설 교육관, 교육관, 드리트랙, 서바이벌, 캘린지코 311.48㎡ 스타디와 이스토래	금성면 산악 청풍호 지상 아웃도어 체험시설 교육관, 드리트랙, 서바이멀,	
체현장 로3922 2층 교육관 및 아웃도어 스 스파이터, 야지수,	제현강 로39건 100 2층 교육관 및 아웃도어 스 스 스파이더, 아자수,	



		현	ä	행		개 정	Ą	<u>}</u>		수 정 안
한 공모 관광모 노레일 히 청풍호 카약.	절기(11월~2월) 절기(3월~10월) 절기(11월~2월) 절기(3월~10월)	토·휴일 C 명 일 C 토·휴일 C 명 일 C 명 일 C 명 일 C 명 일 C 명 일 C 명 일 C 명 일 C 명 일 C R 후 일 C R	9:00~16:00 9:00~16:00 9:00~18:00 9:00~18:00 9:00~16:00 9:00~18:00 9:00~18:00	" 요시 제천시와 협의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정통호 관광모 노래일 하철기(3월~10월) - 청동호 통철기(1월~2월) - 가약 가누장 하철기(3월~10월) - 제천 유순항	평 일 09:00°16 토·휴일 09:00°18 ፱ 일 09:00°18 평 일 09:00°18 평 일 09:00°16 명 일 09:00°16 명 일 09:00°16 명 일 09:00°18 토·휴일 09:00°17 평 일 09:00°18 토·휴일 09:00°18	600 600 6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시 제천시와 협의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병 등)  시 제천시와 협의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병 등)		제월강   변경기(3월 - 10월)   변경기(3
[별표 · · ·	-				[별표 3]					[별표 3] (개정안과 같음)
관광	레포	之 人	설물(팀	번지점프장,하					-	
강체	험시설	널)이용	료(제8	조 관련)						
구 분	종류별 >	기준 개	인 단 최 (10인이성	. I BI 7	구 분 종류별 기준	일반 단체 개인 (10인이	제초 개 인	   건체 고   (10인 이상)		
	번 지 점 프	40,00	0원 30,000	험시설 요금 할인	번 지 점 프	상) 0,000원 50,000원	45,000원	※ 제천시민 40,000원 에 대한		
번 지 점프장	비스윙	1회 20,00	0원 20,000		변 지1회 점프장1회	0,000원 25,000원	25,000원	관광 레포 츠시설 요 25,000원 금 할인		
	이젝션	20,00	0원 20,000	원기에서 기사				-대상: 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지 트 - 할인된 요금 : 개인 30,000원 합시설 1회 왕복 35,000원 30,000원 단체 25,000원	이제선 시 트 30,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중 등 신 분증 제시 하강체협시설 1회 40,000원 35,000원 35,000원 30,000원 자  [별표 8] 관광 레포츠 시설물(제천 옥순봉 출러다리)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8]         관광 레포츠 시설물(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요 금 적 용         일 반 3,000원       만 7세 이상         1) 일반의 경우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할 수 있다.         2) 만 7세 미만은 무료로 한다.

#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05. **제천시장** 

○ 회 부 일: 2021. 10. 05.

○ 상 정 일 : 2021. 10. 14.(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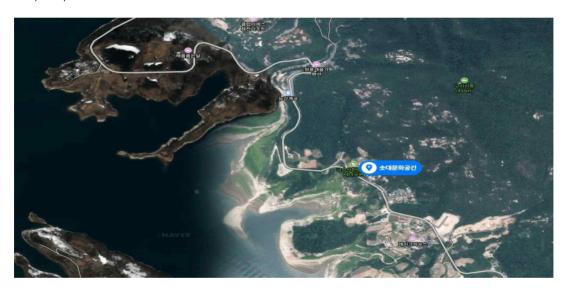
#### 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제라목,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 필요성 : 중부내륙 관광중심 제천의 문화관광 콘텐츠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능강솟대문화공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 12.31.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솟대'라는 특수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지속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 사용 내용
  - 위탁 시설물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 방문 관광객 대상 편익제공 및 친절유지
  - 능강솟대문화공간과 연계된 자체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타 제천시를 대행하여 행하여야 할 공익적 관리행위

- 위탁 시설 개요
  - 소 재 지 : 제천시 수산면 옥순봉로 1100
- 규 모
  - 부 지:1,888 m²
  - 건축물
  - 전시관 179.04m²(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 체험장 198.16m²(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 부대시설 : 쉼터 1식, 연못 1식
- 지원시설: 전시관 1동 및 체험장 1동
- 위치도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 위탁 예산 : 24백만원 (연간)
  - 능강솟대문화공간 위탁관리 보조금 : 1,750,000원×12월=21백만원
  - 능강솟대문화공간 홍보물 제작 : 3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선정

○ 본 사무위탁 동의안은 청풍호반 일원의 문화관광 명소인 수산 면 능강리에 위치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능강솟대 문화공간만이 갖는 특수성 보존 및 발전 가능한 역량을 가진 솟대 전문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4. 관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제라목」

- 5. 주요 질의 및 답변 "생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

#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05.

제천시장

○ 회 부 일: 2021. 10. 05.

○ 상 정 일 : 2021. 10. 14.(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 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출연목적
-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발전시 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 장동력산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 ○ 출연계획

(단위:천원)

구 브		2021년	2022년	증감	
구 분	계(A+B)	당초(A)	추경(B)	(C)	(D=C-A)
출연금	483,000	483,000	0	720,000	237,000

- 출연에 따른 효과
  - 글로벌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한방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 거점화
  -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국내 최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본 출연계획안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태동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 강화 촉진을 통하여, 제천한방바이오산업과 천연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한방인프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추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4. 관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
- 5. 주요 질의 및 답변 "생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끝.

#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05. **제천시장** 

○ 회 부 일: 2021. 10. 05.

○ 상 정 일: 2021. 10. 14.(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충북테크노 파크 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제천시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생태계 기반확대를 위한 지역혁신기관인 충북TP 한방천연물센터와의 전략적 협업체계 구축
  - 충북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 분야인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조성 등 주요핵심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계협력기반 강화
  - 제천시 주요 전략산업(한방천연물산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 등)의 연계사업 공동기획·발굴·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견인력 확대

#### ○ 출연계획

(단위: 천원)

구 브		2021년	2022년	증감	
구 분	계(A+B)	당초(A)	추경(B)	(C)	(D=C-A)
지역신업진흥사업 출연금	200,000	200,000	0	200,000	0

#### ○ 출연에 따른 효과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거점도시로의 도약·성장에 기여
-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전략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기업육성 생태계 고도화 지원역량 확충으로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 기여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정구)

○ 본 출연계획안은 충북의 전략산업진흥과 산업기반 조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시의 한방천연물센터 등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지역산업과 기업지원 등의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천시와 함께 천연물산업종합단지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관·추진·운영하는 등 천연물산업육성 기반조성의 지원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재정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4. 관계 법 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 5. 주요 질의 및 답변 "생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끝.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05.

제천시장

○ 회 부 일: 2021. 10. 05.

○ 상 정 일 : 2021. 10. 14.(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자원순화과장 조성원)

#### 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 필요성
-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소각, 음식물, 재활용선별, 침출수)의 위탁계약기간 (2020. 1. 1. ~ 2021. 12. 31. / 2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 사용 내용

구 분	내 용			
위탁사무명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이티기 디이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소각시설 : 50톤/일			
위탁사무의   내 용	- 음 식 물 : 40톤/일(혐기성소화시설 52㎡/일 포함)			
내 <u>용</u> 	- 침 출 수 : 240 <b>톤</b> /일			
	- 재 활 용 : 30톤/일			

## ○ 위탁 시설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 소 재 지 : 제천시 북부로 1860(신동)		
	• 위탁시설		
위탁시설	- 소각시설 : 50톤/일		
현 황	- 음 식 물 : 40톤/일(혐기성소화시설 52㎡/일 포함)		
	- 침 출 수 : 240톤/일		
	- 재 활 용 : 30톤/일		

-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 단년 계약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유도
- 위탁예산

구 분	내 용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계			• 고정비 : 4,118,276천원 ※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6,294,451	● 변동비 : 2,176,175천원
			※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유지비 등
민간위탁금	소각 및	3,854,162	● 고정비 : 2,151,355천원 (근로인원 35명)
	음식물처리시설		• 변동비 : 1,702,807천원
	재활용선별시설	1,737,333	• 고정비 : 1,517,333천원(근로인원 30명)

구 분	내 용	금액(천원)	산출내역
			• 변동비 : 220,000천원
	침출수처리시설	702,956	● 고정비 : 449,588천원 (근로인원 6명)
	'급현기 시니시'현 	102,330	• 변동비 : 253,368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추진

○ 본 사무위탁 동의안은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음식물, 재활용선별, 침출수) 운영사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 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4. 관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 5. 주요 질의 및 답변 "생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